

金融產業發展과 規制

金 榮 珍

.....《目次》.....

I. 序論	3. 우리나라 金融產業規制의 特徵과 問題點
II. 金融產業規制의 目的一그 理想과 現實	IV. 金融產業 規制緩和의 妥當性
1. 金融機關規制의 정의	1. 金融規制 緩和의 理論的 背景
2. 金融機關規制의 一般的 目的	2. 金融環境의 變化
3. 우리나라 金融機關 規制의 目的 및 그 特殊性	3. 國際的 潮流
III. 金融產業 規制의 現況 및 問題點	V. 結論—金融產業發展을 위한 規制緩和의 基本方向
1. 우리나라 金融產業 規制의 時代의 變遷—政策的方向의 變遷	1. 金融規制緩和의 基本方向
2. 우리나라 金融機關規制의 體系	2. 現在 考慮되고 있는 여러 案에 대한 評價

I. 序論

우리 經濟는 과거 20여년간 정부의 주도하에 눈부신 발전을 해 왔다. 經濟開發計劃에 의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기간 산업이 정해지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金融機關이나 海外貯蓄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조달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이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정부가 金融產業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결과로 金融產業이 私企業으로서 전진한 발전을 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金融產業이 낙후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인식되어 왔고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경주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논의는 金融發展이라는 대명제 아래 金融機關의 自律的 經營을 통한 경쟁의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金融의 量的 發展과 더불어 質的 發展이 성취되어야 동원된 자금의 效率的 配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국내외의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金融自律化를 둘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고 있다. 私企業으로서의 金融機關의 효율적인 경영이 金融發展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가설을 인정한다면 金融機關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인 환경의 조성과 경영자들의 金融革新에 대한 의지의 고취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우리 金融產業의 發展의 저해

요인으로 여러가지를 나열할 수 있겠으나 역시 가장 큰 원인은 規制當局의 規制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規制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規制當局도 金融의 自律化를 표방하고 나선 지 오래이다. 특히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나타난 자율적인 분위기는 金融產業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국제화라는 거대한 조류를 감안할 때 우리는 金融產業의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金融規制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規制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金融機關의 公共性을 인식하고 規制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과연 현재의 規制가 우리 金融機關의 안정성과 企業性을 보장하는 데 적합한가에 대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金融規制에 대한 연구나 논의를 살펴보면 金融規制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이나 金融規制의 완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通貨政策을 담당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많은 논의가 되어온 반면 정작 金融發展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金融機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金融機關의 企業性을 살리면서 金融發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로 規制緩和에 대한 논의가 주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논문은 私企業으로서의 金融機關의 效率的經營이 公共性의 提高라는 목표와 항상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적인 견해를 견지하면서 먼저 우리나라의 金融規制의 목적과 그 특수성을 살펴본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금융규제가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金融規制를 논하는 데 있어 명시된 목적과 그것의 현실적 달성정도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 우리나라 金融產業 規制의 현황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 金融規制에 대해 간략한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토대위에 为 規制緩和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보이고 현재 金融產業이 처해 있는 환경과 국제적 조류를 감안하여 規制緩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規制當局이 金融規制를 완화할 경우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金融規制緩和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利子率 自律화와 金融機關 사이의 業務領域調整問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金融產業 規制의 目的一그 理想과 現實

은행을 비롯한 金融機關은 장기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私企業적인 특성과 함께

공공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금융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공공적인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金融機關이 공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金融機關 개설의 주체 및 金融機關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가격 등에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金融機關規制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金融機關規制의 목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金融機關規制 및 감독체계를 설명하고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金融機關에 대한 규제를 먼저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규제의 목적을 알아보자. 그런 다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금융산업 규제의 목적과 그 달성정도에 대해 알아보자.

1. 金融機關規制의 정의

金融機關規制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本源通貨供給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金融監督機關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개입으로 정의된다.⁽¹⁾ 즉 규제는 進入, 合併 및 支店에 대한 규제, 資產, 負債 및 資本構成과 관련한 포트폴리오規制, 요구불예금, 저축예금에 대한 利子率規制 등과 같은 金融機關에 대한 직접개입의 모든 방식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本源通貨의 통제와 관련한 목적과 수단은 金融機關의規制에 적용되는 목적과 수단과는 다르다고 본다.

2. 金融機關 規制의一般的目的

일반적인 銀行規制의 목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들 목표들은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어떤 규제가 바람직하고 또 어떤 규제가 그렇지 못한가를 평가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1)預金主의 保護

金融機關規制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금주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規制의 압력은 대중들이 財務的去來를 金融機關을 통하여 하기 시작하고, 각 개인 및 기업들이 그들의 상당한 부분의 자금을 金融機關에 예치하면서 일게 되었다.

은행의 예금주들은 다른 유형의 사업체에 대한 채권자나 투자자의 경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예금주들은 은행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자신의 노력을 동원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들게된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예금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銀行規制에 대한 공공의 압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²⁾

(2)貨幣金融制度의 安定(monetary stability)

(1) G. Kaufman and R. Kormendi, Deregulating Financial Services: Public Policy in Flux, Ballinger, 1986.

(2) K. Spong, Banking Regulation: Its purpose, Implementation, and Effects, FRB of Kansas city, 1983, p. 6.

銀行規制는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정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념적으로規制는 기업활동의 급격한 부침과個別金融機關이 당면한 문제가 支佛制度(system of payments) 전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화폐금융제도의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 한 경제내의 通貨量을 통제하는 메카니즘이다. 이러한 通貨量規制의 업무는 보통 중앙은행이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은행은 요구불예금으로 인하여 화폐를 창출할 수 있고 따라서 화폐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은행의 예금 활동은 통제를 받게 된다.

둘째, 안정된 지불제도가 보장되기 위한 直接的規制이다. 規制는 공중의 거래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은행제도를 촉진시켜 지불제도를 방해하는 여러 은행의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재무적 안정을 촉진시키게 된다.

(3) 效率的이고 競爭的인 金融시스템의 維持

은행제도가 갖추어야 할 또 한가지 측면은 고객들에게 경쟁적인 가격으로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金融機關規制의 목적중의 하나는 효율과 경쟁을 촉진하는規制의 틀을 창출하는 것이다.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성과를 얻는 상태로 정의된다. 경쟁은 효율을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경쟁적인 은행제도 하에서 金融機關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경영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이 없다면 각 金融機關은 金融機關끼리 담합하거나 산출물을 제한함으로써 높은가격을 얻으려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規制가 행해지기도 한다.

3. 우리나라 金融機關規制의 目的 및 그 特殊性

우리나라의 경우 規制制度는 성장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운용 및 이에 따른 재무적 위기에 대응하여 그때 그때 발달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金融機關規制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목표들이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金融機關規制의 목적 역시 명문화된 규정에 의하면 앞에서 언급한 金融機關規制의 일반적 목적과 유사한 점이 많다. 金融機關을 포괄적으로規制하는 銀行法에 의하면 “……金融機關의 전전한 경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金融機關規制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³⁾

(3) 韓國銀行, 銀行法, 1982.

〈丑 2-1〉 規制目的의 比較

一般的 規制目的	銀行法에 의한 規制目的
預金主의 保護	預金主 保護
貨幣金融制度의 安定	信用秩序 維持
效率的 競争的 金融시스템의 維持	—
—	國民經濟發展
—	—

이것은 결국 金融機關規制의 목적이 金融機關의 건전한 경영도모, 預金者 保護, 신용질서 유지, 國民經濟발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명시된 規制目的 자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와 둘째, 規制에 의해 그 목적이 과연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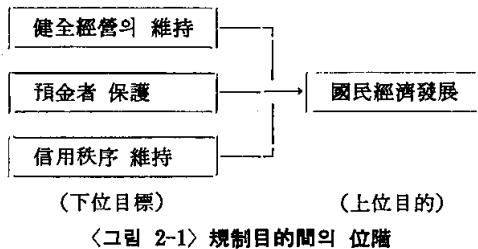
(1) 規制目的自體의 妥當性

다음 표는 앞에서 언급한 規制의 一般的 的目的과 우리나라 銀行法에 명시된 目的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金融規制가 건전경영의 유지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고 효율적 경쟁적 금융시스템의 유지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效率性(efficiency)과 안정성(stability)이 상반관계(trade-off)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效率性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 效率性과 안정성이 상반관계에 있느냐의 문제는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론 하나 경쟁억제를 통한 안정성의 도모는 불필요하게 경쟁에 의한 效率性 提高를 회생하는 것이 된다. 물론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金融機關에 대한 規制目的이 상이할 수밖에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일반적 목적은 金融市場과 金融機關에 의해 투자자금이 배분되는 경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효율적 경쟁적 금융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規制目的을 설정해야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세 가지 목적이 상호 양립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간에 위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銀行法에 명시된 規制 目的을 살펴보면 國民經濟發展이라는 上位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下位目標가健全經營의 維持, 預金者 保護, 信用秩序 維持라고 볼 수 있다. 規制目的간에 존재하는 위계는 그간의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위한 자금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금융부문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는 사실과 상통한다. 金融市場은 오직 실물시장의 성장에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



지 못한다는 관점에 의한 金融產業통제는 金融市場 스스로의 성장가능성과 그 국민경제적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規制目的의 達成과 現實

명목상 설정된 金融機關 規制의 목적 즉 規制의 理想과 그것이 실제 現實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의사결정이 관련된 모든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불완전한 정보가 일반적인 경제에서는 관료독점 의사결정은 오류를 범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 1960년대 이후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경부위주의 경제정책은 그 功이 적지 않지만 그 過 역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실물경제에 중점을 둔 제반 경제정책은 금융부문의 희생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그 過 중의 하나일 것이다.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내저축과 외채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금동원의 극대화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金融機關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었고 이는 또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금조달을 수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과연 건전경영의 유지, 預金者 保護, 신용질서유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金融產業規制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는가? 다시 말하자면 規制에 의해 規制의 목적에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해 보자.

1) 規制와 健全經營의 維持

현재 金融機關이 얼마나 부실화되어 있는가는 정부가 金融機關의 부실채권의 규모와 내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은행의 대 金融機關 저리특별용자가 근래 부활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로 어느 정도 설명된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金融機關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金融機關의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金融產業에 대한 規制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金融產業에 대한 規制현실을 대변하는 예이며 金融產業 부실화의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비중이 <표 2-2>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30%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

〈표 2-2〉 政策金融의 比率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A/B*	65.0	59.4	54.1	53.1	48.0	44.0	43.9	49.0	47.6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A/B	51.0	48.3	50.8	52.9	56.9	65.1	64.7	68.2	68.1

* : A/B = 政策金融 / 總貸出金

資料 : 韓國銀行, 通貨金融統計, 各 年度

〈표 2-3〉 支給保證 代支給金 累計現況

(單位 : 億원)

	982.12	1987.8	增加의 主原因
商 業	443	3,254	明星事件
朝 興	824	2,538	永東開發事件
서 울 信 託	374	1,319	造公, 라이프 住宅, 凡洋商船 등
第 一	697	932	問題企業
韓 一	245	873	
合 計	2,583	8,916	

資料 : 朝鮮日報 1987.10.18 參照

실은 構造的 不失化의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金融機關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인 투자안에 대한 2차적 심사기능을 도외시한 정책금융은 부실산업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다음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은행의 기업보증 대지급금의 증가로 나타난다. 시중은행의 대지급금은 1982년 말 2,583억원이던 것이 1987년 8월 말 현재 8,916억원으로 3배이상의 격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規制가 오히려 金融機關의 전전경영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規制와 預金者 保護

우리나라의 경우 金融機關이 파산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지불못한 사례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금자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하면 金融產業規制는 예금자의 권리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실세금리와 동떨어진 관제 금리구조는 私金融市場을 拔興시키고 이에 따른 금융사고를 유발시켰으며 심지어는 金融機關을 매개로 사채자금이 융통되는 변칙적 금융거래(상업은행 수기통장사건)에 의한 금융사고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금융사고에 의한 금융부실화와 정책금융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금융부실화의 궁극적인 부담은 결국 국민의 조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부실화된 金融機關을 방지하면 화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적자보완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1983년 이후의 대형금융사고와 부실기업의 속출로 인한 자금수지를 보전하기 위해 1987년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韓國銀行의 기타 어음 등 證券擔保 貸出取扱規定”을 비롯하여 한은대출과 관련된 금통위 규정을 개정, 韓銀特融의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한은특融은 연리 6%의 기타 정책지원(A1자금)과 연리 3%의 산업구조 조정용자금(A2자금)과 같은 저리의 자금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기초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통화증발의 우려가 있고, 설사 기존대출을 저리로 대환해 주어 통화증발의 우려가 없더라도 부실대출지원으로 다른 부문의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모든 부담을 최종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이 부담한다고 할 때 規制에 의한 預金主 保護가 과연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첫번째 이유보다 더 직접적인 예금주 권리의 침탈증거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성장자금의 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金融機關의 金融商品 특히 受信商品의 금리면에서 재무부장관 혹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의해 最高利率이 規制받고 있다.

이와같은 金利 規制는 명목상의 금리와 실제금리간의 금리구조를 크게 왜곡시켰다. 다음 <표 2-4>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간의 관계를 더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축성 예금의 실질이자율이 사채의 실질이자율에 비해 큰 게 낮을 뿐만 아니라 음의 실질 이자율을 보이는 경우도 1962년 이후 11개년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예금주의 부가 은행자금의 차입자에게로 이전해 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 2-4> 名目金利와 實質金利

年 度	名目利子率	實質利子率	年 度	名目利子率	實質利子率
1962	15.0	-3.4	1974	14.8	-14.7
1963	15.0	-14.3	1975	15.0	-10.7
1964	15.0	-15.0	1976	15.5	-5.2
1965	18.8	12.6	1977	16.2	0.5
1966	30.0	15.5	1978	16.7	-5.2
1967	30.0	14.4	1979	18.6	-2.6
1968	27.6	11.5	1980	22.4	-3.2
1969	24.0	9.2	1981	19.2	3.3
1970	22.8	7.2	1982	10.9	3.8
1971	22.2	6.4	1983	8.0	5.1
1972	15.7	-0.4	1984	8.9	4.9
1973	12.6	-0.8			

資料：韓國銀行，通貨金融統計，1984

規制에 의한 예금주보호가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알 수 있다.

3) 規制와 信用秩序 維持

規制의 또 하나의 목표는 銀行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제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볼 때 대부분의 規制는 신용질서 유지와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清算能力維持 및 流動性 確保를 위한 規制, 銀行活動制限 規制, 新規參與制限 規制, 經營管理指導 등 모두가 화폐신용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諸 規制가 얼마만큼 그 기능을 발휘하여 신용질서를 유지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이자율 상한설정은 金融市場을 公金融市場과 私金融市場으로 양분하여 왜곡시키고 公金融市場에 의한 자금증개가 극도로 위축되어 金融機關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곧 특혜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公金融市場의 위축은 상대적으로 私金融市場에 의한 자금증개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사금융의 폐쇄의 심각성은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법령이라는 사채동결조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私債市場의 규모는 8.3조치때 3천 4백 56억원이, 이철회, 장영자 사건때 2천 4백억원, 명성사전때 1천 7백억원이 신고된 것으로 미루어 그 규모가 엄청나게 를 것으로 짐작되나 지하경제의 속성상 그 크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정부의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에 따라 신고된 사채대체자금융자신청액 : 1조 2백 50억원), 이와같은 私金融市場에 의한 거래는 비정상적인 자금의 유통으로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원배분의 왜곡, 조세부담의 불공평 심화, 생산성 저하, 부정확한 통계활용에 따른 정책의 시행착오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표 2-5〉 80年代 以後 大型 金融事故와 그 原因

日字	事故名	原因	其他
1987.8	大州信用金庫事件	大株主資金횡령	資本出處 私債去來
1987.3	凡洋事件	經營權紛爭	經濟政策과 金融의 政府支配
1987.11	高麗開發私債凍結	法定管理	私債資金
1983.8	明星事件	私債詐取	
1983.8	5개 信用金庫 예금횡령	簿外去來 예금횡령	私債資金
1983.9	永東開發振興事件 (1천 4백 7십억)	銀行과 私債市場의 유착	銀行支給保證利用
1982.4	이철회, 장영자 사건	어음詐欺	私債波動
1982.□	김상기사건		

둘째, 私債市場의 번성은 大錢主—中間錢主—大中介人—中間中介人—金融機關—企業(最終資金需要者)이라는 3-6단계의 점조직망을 통해 거래가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다. 다음 표는 1980년대 이후의 대형 금융사고와 그 원인을 조사한 것이다.

금융사고의 원인중 대부분이 金融機關과 私債市場의 유착으로 인한 사고이고 그때마다 金融市場은 큰 충격을 받게 되어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철희, 장영자 사건 이후 정부는 6.28, 7.3조치 등에 의해 이자율, 법인세율 인하 및 金融機關의 자율화 확대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III. 金融產業 規制의 現況 및 問題點

1. 우리나라 金融產業 規制의 時代的 變遷—政策的 方向의 變遷

우리나라의 金融規制는 경제, 사회적 변화와 금융체제의 변천등을 통해 볼때 <표 3-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시기는 경제운용의 기초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리의 신봉기인 1950년대, 군사정변과 함께 정권정통성의 부재를 무마하기 위한 계획경제의 도입기인 1960~1970년대, 그 부작용의 인식과 이에 따른 金融自律화로 특징지워지는 1980년대로 나뉘어 진다.⁽⁴⁾

(1) 1950~1960(最小限의 規制期)

이 시기는 해방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 전쟁이 일어 났었기 때문에 일제의 잔재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금융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전후 복구를 위한 지원금융체제도 갖추어야 했다.

이 시기에는 1954년 8월 銀行法이 시행되면서 金融機關에 대한 감독이 한국은행은행감독원으로 일원화 되었으며 金融機關을 민영화 함으로써 자주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운용자산 즉 위험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金融機關의 전전성을 강화하였다.

(2) 1960~1980(規制強化期)

이 시기는 우리경제가 성장우선 정책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 금융체제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1961년 6월 “金融機關에 대한 임시조치법”으로 일반은행이 다시 정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4) 韓國銀行, 韓國의 銀行監督, 1986, p.17.

되어 인사와 경영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그 이후 농업협동조합등 특수 금융체제를 발족 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감독권을 재무부에 맡김으로써 은행에 대한 감독권이 이원화되었다. 그리고 자산운용 규제를 1962년의 1차 銀行法 개정때부터 완화하여 1969년의 3차 개정때에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성장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부적이고 고질적인 인플레 압력과 기업 재무구조의 불건전, 간접금융에의 지나친 의존 등의 문제점과 석유파동과 같은 대외적인 여건의 급변 등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면에서 1974년 5. 29조치와 같은 강력한 금융정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 업무는 상당수의 부실기업을 정리함으로써 불건전 자산의 정리를 촉진하였으며 거래은행제도를 실시하는 등 金融機關의 여신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금운용의 건전성, 안전성 및 수익성의 확보를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은행경영의 건전화와 금융자금의 효율화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3) 1980-現在(規制 緩和期)

1960~1970년대의 성장우선정책이 넓은 문제점이 1970년대 말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따라 정부주도형 경제체제가 점점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의

〈표 3-1〉 우리나라 金融規制의 推移

	經濟政策基調	規制의 主眼點	主要 規制 및 措置
最小限의 規制期 (50년대)	· 安定優先 政策	· 金融機關의 安全性 (健全性)維持	· 流動性 規制 · 포오트폴리오 規制 · 金融機關 民營化
規制強化 前期 (60년대)	· 成長優先 政策	· 資金動員의 極大化와 投資資金의 政策的 配分이 라는 側面 強調	· 金融機關의 所有權과 人事權의 政府歸屬 · 特殊 金融機關의 新設 · 危險資產의 規制
規制強化 後期 (70년대)	· 成長優先 政策	· 政策金融의 非效率性 是正	· 不健全 資產整理 促進 · 與信管理 效率化를 위한 諸制度導入
規制 緩和期 (80년대)	· 民間 主導型 經濟體制로 의 轉換	· 金融機關의 自律性 提高	· 内部經營規制 縮小 舊備 · 金融機關 民營化 · 新規銀行設立 · 店舗設立自由化 · 業務領域 多邊化 · 第2金融圈 金融機關 門戶擴大 · 同一人 貸出限到 · 同一人 支給保證限到 · 同一 系列 企業群 與信限到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에 따라 1980년 “일반은행 경영의 자율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부문의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982년 말에는 金融機關 임시 조치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에서는 은행의 내부 경영에 대한 간섭 규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은행 경영의 자율화를 통한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시키고, 金融產業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금융 효율을 提高시키며, 金融產業의 경쟁력, 건전성을 강화하며 경영지도위원의 검사를 강화하는 등 감독의 질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자율성과 공익성의 조화적 발전을 위한 정비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2. 우리나라 金融機關 規制의體系

(1) 金融機關 規制根據法

金融機關을 規制하는 법규로는 상거래와 이에 따른 자금의 수수와 같이 일반적인 금융 현상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法律과, 각 金融機關의 금융 행위를 직접적으로 規制하는 法律,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法律, 자본시장, 외환시장, 보험시장을 規制하는 法律과 이들 법률의 하위법으로 施行令, 施行規則 및 諸 規定 등이 있다.

수 많은 금융관련 規制法規 중 전 金融機關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는 銀行法과 韓國銀行法 뿐이다. 金融機關을 規制하는 법규는 이들 법규를 양대축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韓國銀行法은 원칙적으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金融機關에 적용된다. 그러나 銀行法이 적용되는 金融機關은 短期金融會社, 綜合金融會社, 리스會社, 相互信用金庫, 信用協同組合, 새마을 金庫 등을 제외한 전 金融機關이다.

(2) 金融機關規制의種類

銀行法상에 나타나 있는 金融機關 規制를 그 기능적 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다음 <표 3-2>와 같다. 金融機關에 대한 規制는 清算能力維持, 活動의 制限, 新規參加制限, 經營管理指標, 綜合的 監督(supervision)과 같은 다섯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다.⁽⁵⁾

金融機關의 청산 능력이라는 것은 金融機關이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金融機關의 모든 부채가 보유자산에 의해 변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金融機關의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파산의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은행감독기관은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적정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 구체적 規制로는 資本金規制, 積立金規制, 지급준비금規制 등이 있다.

金融機關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金融機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 前揭書, p. 6.

〈표 3-2〉 銀行法上의 規制의 種類

機能	種	法條文	備考
清算能力維持 및 流動性確保	資本金規制 積立金規制 支給準備規制	銀行法 제15조, 16조 17조, 9조 1항 銀行法 제17조의 2 銀行法 시행령 제3조 銀行法 제31조 韓銀法 제56조, 57조, 58조, 59조 60조, 61조, 62조, 63조	
銀行活動	業務領域規制 포오트폴리오規制	銀行法 제18조, 19조, 20조, 21조 銀行法 제22조 證券去來法 제29조 銀行法 제24조, 25조 銀行法 제22조 銀行法 제27조 1항의 2호 // 2호의 2 銀行法 제27조 1항 3호 // 6호 // 7호 // 8호 // 10호 銀行法 제15조	商業金融業務와 長期金融業務 證券業務 銀行의 兼營業務(信託業務 credit card業務)
	利子率規制	銀行法 제30조, 38조의 6 韓銀法 제64조, 65조	
	與信規制	銀行法 제27조 1항 4호 // 5호 銀行法 제30조의 2 銀行法 제27조 1항의 4호 및 4호의 2 銀行法 施行令 제7호	同一人에 대한 與信限度 株式擔保貸出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 偏重與信規制
新規參加制限	新規認可規制	銀行法 제 9 조, 12조 韓銀法 제17조, 18조, 39조	新設, 合併, 解散
	支店規制	韓銀法 제 9 조 1항 2항	
經營管理	內部經營規制	韓銀法 제 7 조 2항, 28조 2항 銀行法 제35조 商法 제449조 法人稅法 제 9 조 2항의 5호, 7호 銀行法 제34조	經營評價, 業績分析 및 原價計算 所有資產의 健全性, 經營指導의 基準, 決算指導, 利益管理指導 會計處理指導 貸損承認

綜合的 監督	人事權 規制	銀行法 제28조의 2 銀行法 제39조, 38조, 38조의 4 韓銀行法 제115조, 30조 114조의 2 銀行法 제28조	任員의 資格制限 問責 任職員의 兼職制限
監查		韓銀法 제28조, 30조 銀行法 제32조, 33조, 34조	
監督		銀行法 제 7조	
制裁		銀行法 제38조~제38조의 8 銀行法 제39조 韓銀法 제115조 銀行法 제 40조 韓銀法 제116조 銀行法 제15조 4항 韓銀法 제114조의 2	罰則規定 任員 解任 勸告 金融機關 認可取消 金融機關 解散 任員 問責, 處分要求

資料：銀行法，1982，各條項 參照

특정자산의 보유나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취급을 規制하는 業務領域規制, 포오트폴리오規制, 利子率規制, 與信規制 등이 있다.

금융업에의 신규참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무능하고 위험성이 높은 은행의 신규진출을 사전에 저지하고 과도한 영업망 확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規制에는 신규참가 規制와 접포規制가 있다.

金融機關 경영의 전전성을 유지하고 내부경영관리의 합리화 및 정상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목표관리에 의한 경영의 효율성을 提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金融機關에 대해 업무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경영지도기준, 결산지도, 보유자산 전전성 보유기금 회계처리의 지도, 그리고 경영평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諸規制를 實行하고, 각 金融機關이 준수하게끔 하는 綜合的監督이 있다. 이에는 事前規制, 檢查, 監督 및 其他 制裁가 있다.

3. 우리나라 金融產業規制의 特徵과 問題點

우리 金融產業의 발전을 위하여 金融規制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金融規制의 특징과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전술한 대로 우리나라의 金融規制는 우리 경제의 높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부족한 산업자금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자율을 정하고 자금의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투자가 원활히 되기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金融機關의 自律的인 經營을 제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 전반적인 여건의 변화나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원래의 規制目的이 이미 그 타당성을 잃게 되었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規制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金融規制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規制방향의 설정에 기본적인 밑받침이 되었으면 한다.

(1) 우리나라 金融規制의 特徵

우리의 金融規制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公共性에 過多한 置重, 企業性의 無視

金融機關을 과거에는 순전히 경제정책 수행의 도구로 보고 企業性을 거의 무시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公共性이 중시된 나머지 企業性이 무시되었다는 점은 정책금융의 비율이나 여수신 금리의 規制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公共性의 치중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파해서는 안되는 점은 과다한 規制를 통해서 金融產業의 안정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오히려 金融產業의 企業性의 무시는 장기적인 金融產業의 안정성을 해친다고도 볼 수 있다.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는 金融機關들이 서로 견전한 경쟁을 통하여 적정이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金融產業의 안정성과 아울러 金融產業의 公共性이 提高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公共性과 企業性의 상반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規制의 강화를 통하여 金融機關의 체질을 개선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는 점차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견전한 경쟁을 통한 金融產業의 체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여러가지 規制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 positive system의 適用으로 規制의 執行이 매우 極直의이고 金融革新의 環境을 造成하지 못함.

우리는 金融機關이 어떠한 업무만이 할 수 있다는식의 positive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명기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방식의 規制는 金融機關의 업무를 과다하게 한정시켜 金融機關 간의 경쟁을 억제하고 매우 안일한 경영을 가져오게 하며 金融革新의 가능성은 배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급격한 金融機關의 환경의 변화나 기술의 진전을 고려하면 경직적인 positive system에서의 탈피가 급선무이다. 외국의 경우 negative system을 적용하므로 金融機關이 금융완화를 주도하게 되며 金融機關이 私企業으로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金融革新이 金融規制의 근본적인 취지를 위배하지 않는 한 허용되기 때문에 매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金融機

關의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3) 規制의 一慣性 缺如

우리 規制는 規制가 성취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가 보다는 그때 그때의 단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부터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생기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金融機關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단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規制를 실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대중의 요구에 따른 金融機關이 公共性을 유지시키면서도 企業性을 유지하는데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規制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規制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각 金融機關에 적용되는 金融規制의 정도가 다르며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의 金融規制의 시행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다.

4) 行政指導의 過多

과거에 있었던 과다한 規制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여러 規制방식을 낳게 되었다. 예로 金融機關의 인사권 장악, 지시 금융, 유가증권 강제 인수 등 비공식적 規制를 통하여 自律的인 經營을 제한함으로써 金融機關의 企業性을 억압한 것이 사실이다. 自律的인 經營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고 경영자의 임명권이 정부에 있었고 자산의 운용 측면에서 과다한 비공식적 간섭이 많았다는 사실은 우리 金融產業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간섭이 자율적인 경우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러한 規制의 폐단이 경영인으로 하여금 金融機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을 하기에 힘들게 만들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5) 過多한 法規에 비하여 監督體系의 相對的 微弱

우리 나라의 경우 規制를 정당화하는 법규는 적지 않으나 이러한 規制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체계나 감독의 효율성은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金融機關의 여러 문제점들의 대부분이 規制 법규를 정확히 지키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 결코 우리나라의 金融規制에 대한 법규가 미흡하여 생겨났다고 볼 수는 없다.

(2) 金融規制로 인한 問題點

위에서 지적된 다섯가지 金融規制의 특징은 산업 자금 동원의 효율화, 강력한 통화정책의 집행, 실물부문의 강력한 지원과 같은 장점도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우리 金融產業에 안겨다 주었다.

1) 金融機關의 體質 弱化

金融機關의 企業性이 무시되고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金融機關의 체질은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상품의 가격이 뮤이고 원료의 가격이 정책적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는 金融機關이 적정한 수익위에 전전한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과거 산업자금 동원의 역할을 맡아온 일반 은행의 경우에는 재무구조의 취약과 수익율의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2) 金融革新의 缺如

과다한 規制下에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소개가 規制當局의 선도하에서 이루어지는 풍토에서는 金融機關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물론 여러가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속속 소개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제약이 완화될 때 金融機關의 자발적인 金融革新이 가속화되리라고 본다.

3) 對外 競爭力 弱化(經營의 經驗 不足)

과다한 規制로 인한 체질의 약화와 金融革新의 의지 약화는 앞으로 전개될 국제화 시대에 있어 우리 金融產業이 당면하게 되는 외국金融機關과의 경쟁에서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金融產業의 發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유능한 인적 자원이며 이는 교육과 더불어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경영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4) 通貨政策의 遂行에 필요한 彈力的인 金融體系의 缺如

通貨政策을 관장하는 당국이 金融機關과 협조하여 원활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金融產業이 육성되어 있어야 한다. 통화 정책의 수단이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金融市場이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金融機關의 경영이 자율적으로 경쟁 원리에 의하여 수행될 때 만이 가능한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5) 資金의 非效率的 配分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過多한 規制는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자금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한다. 자율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자금의 분배가 가장 효율적인 분배를 보장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효율성의 결여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부실채권이라는 큰 문제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金融機關이 2차의 投資 審查者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效率的 資源의 分配는 결국 金融產業의 安定性과도 직접 연관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V. 金融產業 規制緩和의 委當性

金融規制 緩和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 아직도 일각에서는 懐疑的인 견해가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적합한 金融規制에 의하여서만이 가능하였고 현재의 規制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빠른 金融規制의 緩和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견해다. 주로 산업체에서의 의견이 이렇고 規制當局의 견해도 이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자율화를 바라고 있는 金融產業界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왜 金融規制의 緩和가 이론적으로나 여러 환경의 변화, 그리고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할 때 당연한 방향인가를 보이고자 한다.

1. 金融規制 緩和의 理論的 背景

(1) 自律的인 金融機關의 役割

金融機關이 私企業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로 金融機關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 누구보다도 거래비용을 싸게 해줄 수 있다는 것과 개개인의 고객보다는 보다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최적 자산결정을 하기 때문에 분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고객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개인보다 정보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金融機關이 수행하는 위의 세가지 기능은 金融機關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때 가장 잘 수행할 수가 있다. 金融機關은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누구보다도 싼 거래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金融機關이 자율적인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최적의 위험 분산 기능도 金融機關이 동원된 자금을 여러 대상에 분산 투자할 때 가능하며 이는 업무영역에 대한 規制가 낮아질수록 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한편 정보의 생산 면에서도 金融機關이 자체로 생산한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 결정(대출 및 자금조달 결정)은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⁶⁾

(6)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論文들을 參照.

G.J. Benston & C.W. Smith Jr., "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the Theory of Financial Intermediation," Journal of Finance (1976), pp. 215-231.

H.I. Grossman, "Risk Aversion,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Journal of Finance, Vol. 22(1971), pp. 611-622.

M.A. Klein, "The Economics of Security Divisibility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Journal of Finance (1973), pp. 923-931.

H.E. Leland and D.H. Pyle, "Informational Asymmetries, Financial Structure,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Journal of Finance (1977), pp. 371-387.

위의 세가지 기능을 金融機關이 누구보다도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바로 金融機關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런 이유로 일반 개인이나 투자자들이 자금을 金融機關에 맡기게 되며 金融機關은 이렇게 동원된 자금을 가지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자산에 배분하게 된다.

(2) 自律的인 金融機關 經營의 利點

규제가 완화되어 경영이 보다 자율화되는 환경에서는 경제주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1) 個人投資者

개인이 金融商品을 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소비형태를 자신이 원하는 가장 좋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金融機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가격이나 상품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 金融機關은 다양한 상품을 매력적인 가격에 일반에게 제공하게 되어 개인은 자기가 원하는 투자대상을 가질 수 있고 또 싼 가격에 금융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효용(만족도)은 올라가게 된다.

2) 金融機關

金融機關의 企業性이 강조되어 보다 효율적인 자산과 부채의 구성이 가능하고 이는 金融機關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보다 전진한 경영이 유도될 수 있다. 金融產業의 발전은 金融機關의 效率的經營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한 金融機關의 존재이유나 金融機關의 역할이 金融機關 경영이 자율화될 때 가장 잘 수행되기 때문이다.

3) 企 業

金融規制의 완화로 인하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利子率 規制의 완화시 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항상 정당한 가격이며 이러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누구의 피해위에 혜택을 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좋은 기업은 싼 자금을,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비싼 자금을 쓰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4) 經濟 全體의 側面

경쟁을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그 결과로 많은 양의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환경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金融發展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 즉 金融의 質的 및 量的 發展이 가능하게 된다. 경쟁을 통한 가격기능을 이용한 자금의 동원 및

분배방법외에 더 나은 방법은 있을 수 없다.

2. 企業環境의 變化

(1) 民間主導 經濟의 要請(經濟規模의 膨脹과 效率性의 提高의 必要性)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제는 정부가 자금을 배분하기에는 經濟規模가 너무 커졌고 經濟構造도 多樣化 되었다. 또한 과거의 자금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따라서 과거처럼 정부가 정책 금융과 같이 우선 순위를 정해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테에는 한계가 있고 가격기능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필요성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金融機關의 2차적 투자심사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 國際收支의 黑字基調

우리 경제는 이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흑자기조의 경제에 들어 섰고, 투자보다 저축률이 높아져 과거의 만성적인 대출수요 초과 문제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金融機關으로의 자금 공급이 늘어나 과거처럼 자금의 공급만 있으면 자금의 수요는 항상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또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져 金融市場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金融機關들도 이제 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3) 金融需要의 多樣化

과거의 우리 경제는 오늘 벌어 오늘 쓰기에도 급급한 경제였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 윤택해지고 여유 자금이 늘어나 앞날을 설계할 여유가 생겼다. 따라서 미래의 소비를 위해 오늘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이러한 金融需要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필요해졌다. 즉 金融革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 國際競爭力 提高의 必要性

오늘날 우리 경제는 점점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金融市場에 외국 金融機關들이 들어와 우리 金融機關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金融機關들도 해외 金融市場에 진출했거나 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안일하게 우리 金融機關들끼리 우리나라 金融市場을 나누어 먹던 시대는 지나갔고 외국 金融機關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나가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경쟁속에서 우리 金融機關들이 살아 남으려면 자율적인 金融機關의 경영을 통해 노우 하우(know-how)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外國 金融機關들과 겨룰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提高할 필요가 있다.

(5) 技術革新의 進展

현대에는 과거에는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가지 기술이 발전했다. 예를 들

어 컴퓨터 전산망이 생겨 전국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 상품의 출현이 가능해지는 등 金融自律化의 여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3. 國際的潮流

어느 나라의 경우나 金融機關에 대한 주된 規制는 利子率 規制, 營業地域 規制, 業務領域規制로 대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를 規制는 대부분 1930년대 초기의 은행이 연쇄 도산을 경험(1931년에 2,213개, 1932년에 1,416개, 1933년에 3,891개)한 후 제정된 Glass Stegall Act와 그 이후의 여러 조치들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분리, 예금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Regulation Q, FDIC의 설치 등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로 인한 Crowding-out 현상으로 시장금리가 은행의 예금이자율을 상회하게 되자, 金利上限規制에 둑인 은행의 자금이 非銀行金融機關과 다른 투자대상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金融機關에 의한 金融革新이 추진되었다. 金融革新과 함께 기술적, 경제적 환경이 規制 당시의 환경에서 크게 변화되게 됨에 따라 規制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되자, 미국은 金融產業에 대한 規制緩和(deregulation)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된 것이 1980년의 DIDMCA⁽⁷⁾와 1982년의 The Garn-St. Germain Act이다. 전자의 주요한 내용은 Regulation Q의 철폐, 요구불예금에 대해 이자지급 허용 등이다. 후자의 주요 내용은 투자은행의 MMMF⁽⁸⁾와 경쟁 할 수 있도록 신종금융상품 도입을 허용한 것이다. 1986년 3월 1일 현재 모든 이자율 規制가 철폐되었다. 이와 같은 이자율 規制와 業務領域規制의 철폐, 완화는 金融機關의 혁신노력을 더욱 자극한 결과 자산의 증권화, 金融機關의 동질화, 金融市場의 국제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첫째, 동질화란 각 金融機關간의 업무영역 사이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질화란 金融機關의 취급상품에 대한 規制緩和의 결과 각 金融機關들이 다각화의 경제성(economy of scope)을 추구함으로써 金融機關간의 특징이 모호해지는 현상인 것이다.

둘째, 증권화란 지금까지 유동성이 없어 통용되지 않던 증권이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근거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7)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의 약칭으로 非銀行金融機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銀行金融機關에 대한 제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이다.

(8) Money Market Mutual Fund의 약칭으로 증권회사에 의해 개발된 금융상품이다. MMMF는 공개형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모집된 자금을 단기금융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시장이 자율에 연동된다. 배당에 대한 규제는 없다.

세째, 국제화란 規制의 축면에서는 진입 및 확장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金融機關이 외국에 나가서 금융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시에 타국의 金融機關이 우리나라에서 금융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規制緩和의 배경은 (1) 실물경제구조와 금융경제구조의 변화, (2) 정부 및 은행간의 이해일치, (3) 외국의 압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 축면으로는 성장경제에서 안정경제로의 진입, 저축성향의 변화, 기업의 재무관리 형태의 변화, 국공채의 대량 발행 등의 요인이 결합하여 金融規制緩和를 촉진시켰다.

또 일본 정부는 국공채를 대량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공급과잉현상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 했고 은행도 자금유출현상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이들이 상호결합적으로 작용하여 金融規制緩和가 진전되었다. 그밖에 엔화의 가치와 달러화의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1984년의 달러-엔 위원회(dollar-yen committee)의 설치도 規制緩和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規制緩和의 주된 내용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자율화, 業務領域規制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는 정부주도로 金融產業規制를 완화시켰지만, 規制의 緩和는 金融機關의 혁신노력을 더욱 부채질하여 金融機關의 同質化(homogenization), 資產의 證券化(securitization), 金融市場의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오늘날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金融自律화와 金融革新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資產의 證券化, 金融機關의 同質化, 金融市場의 國際化가 진행되고 있다.

V. 結論-金融產業 發展을 위한 規制緩和의 基本 方向

앞에서 우리는 金融規制에 대한 理論者 考察, 그리고 우리나라 金融規制의 現況, 特徵 및 問題點을 논의하였고 또 현시점에서 왜 우리가 金融規制의 완화를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당위를 이야기하였다. 한편 規制當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金融規制의 완화에 대하여 상당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金融發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안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근래에 와서 規制의 완화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는 利子率 規制에 대한 자율화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와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육성되어온 각 金融機關들의 여러 업무들을 어떻게 조정하여 金融機關간의 경쟁을 높이면서 안정된 金融產業을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크게 양분된다고 하겠다.

이 두 주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나 연구가 많이 나왔고 현재로서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金融規制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먼저 하고 앞의 두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다.

1. 金融規制緩和 論議의 基本 方向

첫째, 金融規制 완화는 우리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을 다 함께 고려하면서 특히 金融產業의 發展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들을 살펴보면 規制當局의 입장이나 대기업의 입장에서 주로 논의가 되거나 또 여러 金融機關들 중에서 특정한 기관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둘째, 金融機關의 自律性을 보장하는 規制緩和의 방향이어야 하며 적절적인 規制나 金融產業의 개편보다는 수동적인 환경의 조성이어야 한다. 즉 金融機關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어야 하겠다. 金融規制의 완화라고 해서 이러한 추세가 정부나 規制當局에 의하여 주도되고 실행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화라고 할 수가 없다. 規制當局은 金融機關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선에서 그 역할을 한정시켜야 한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경제구조에서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金融規制를 통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구조에서는 정부가 과거와 같이 역할을 잘 하기가 힘들 것이다.

세째, 規制의 緩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 아직 金融規制 緩和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規制의 완화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金融規制緩和의 시작은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서서히 완화를 추구하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매우 신중히 오랜 시간을 두고 金融規制를 완화하는 이유는 우선 금융완화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알 길이 없고 둘째 그 規制緩和의 방향이 잘못 되었을 경우 문제점이 나타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이다.

네째, 현재와 미래에 있을 金融環境의 변화를 고려한 規制의 방향이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 금융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規制의 성격도 변해야 하며 새로운 방향의 規制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모든 대차관계의 증권화 추세,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 경쟁의 심화 등등 여러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國際的潮流를 감안한 規制의 방향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금융완화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金融規制의 완화는 실제로 우리 金融產業의

현황과 특징을 잘 분석한 이론이나, 실증연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의 경험이나 國際的潮流를 감안하면서 우리의金融規制緩和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現在考慮되고 있는 여러 案에 대한 評價

(1) 利子率規制緩和의 基本方向

1) 利子率規制緩和에 관한 根本的인 趨旨

일반적으로 利子率規制는 金融機關들이 자금조달에 있어 서로 과다한 경쟁을 벌이게 되면 그 결과 자금의 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 그 자금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따라서 金融機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안정성면에서 逆效果를 내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실시되어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利子率規制의 근본적인 목적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라기보다는 경제발전이라는 지상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金融機關을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산업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싼 비용으로 자금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金融機關들의 과당경쟁에서 오는 폐해를 막고 金融機關의 체질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경제 정책의 한 방편으로 이 規制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利子率規制의 완화를 논의할 때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金利 自律化란 預金利子率 自律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金融機關이 경쟁적인 예금이자율을 고객에게 적용시킴으로서 일반소비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고 그 동원된 자금의 대가로 지불된 이자율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金融機關이 하게 될 때 金融產業의 發展을 통하여 금융의 효율성을 提高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이 바로 우리가 利子率規制를 완화해야 된다는 근거가 된다.

2) 利子率規制緩和의 現實的 問題點

利子率規制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金融機關의 體質이나 營業成績이 資金調達을 위한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자금비용의 상승, 그리고 더 위험한 자산의 보유로 인하여 악화된다는 것이다. 과연 과당 경쟁으로 자금의 비용이 올라가며 따라서 金融機關이 더 위험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누구도 자신있게 결론내릴 수 없는 성질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利子率規制의 緩和 측면에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자율 차율화에 따른 금리 변동의 방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자율 規制가 그

근본적인 목적이 저리의 자금을 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利子率規制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해 지고 만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은 자금을 싸게 공급하는 방법은 이자율 상한을 낮게 책정하면 될것이고 利子率規制緩和는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질 때까지 그 실시를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利子率規制 완화의 기본적인 동기가 금리의 자율적 기능을 보강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자금의 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면 이자율완화 후의 금리의 추이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저리의 자금공급은 예금자라는 일반대중의 희생위에서 만이 가능하며 자금의 수요자에게로의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동시에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자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利子率規制 緩和의 방안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자율 완화의 여러 단계이다. 특히 利子率 自律化를 추진하는데 있어 貸出利子率서부터 자율화하기 시작한다는 의견이 있다. 전술한대로 利子率 規制의 근본적인 목적이 金融機關의 저렴한 자금공급이라면 貸出利子率 自律化는 規制의 목적과 상치된다. 規制當局의 의도가 저렴한 자금공급이라는 목적을 어느정도 완화하는 것이라면 굳이 대출이자율부터 자율화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출이자율은 規制하에서도 金融機關이 실질금리를 여러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출금리의 자율화가 진정한 자율화의 첫 단계라고 보기는 힘들다.

3) 利子率 規制의 方向

무엇보다도 利子率規制 완화의 핵심은 결국 왜 우리가 利子率 自律化를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동기에 달려 있다. 진정 가격기능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의 동원 및 분배와 金融機關의 발전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利子率規制의 완화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리고 이자율 완화의 기간은 될수록 오랜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기간동안에 각 金融機關들이 利子率 規制의 완전철폐에 대비하여 경쟁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에는 規制當局이 여러가지 단기적으로 조정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장기적으로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金融機關의 業務領域 調整의 基本方向

1) 業務領域調整의 基本的인 趣旨

일반적으로 金融機關의 業務領域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commercial banking과 investment

banking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證券業務와 貸出業務의 분리된 이유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경제공황기에 投資銀行(investment banking)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게 되자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여 시중은행의 신뢰성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분리되었다. 둘째, 시중은행이 증권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될 경우 저축된 자금이 합법적인 상업적 용도에서 투기적 용도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세째,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이 결합될 경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利害의 相衝과 自己仲介(self-dealing)를 방지할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로 이러한 취지에서 위의 두 업무를 분리했다가 보다는 앞의 利子率 規制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規制 擔當者가 자금의 원활한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金融機關의 업무를 조정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業務領域에 대한 理論的인 背景이나 基有的인 立場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철저한 분업주의도 아니며 그렇다고 겸업주의를 허용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론적 측면에서 위의 두 분야가 과연 분리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金融機關이 한분야에 전문화 하는것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유리한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金融機關 業務領域調整의 논의는 金融機關사이의 불균등한 경쟁위치와 이 결과로 나타난 수익력의 차이,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金融產業 再調整必要, 그리고 國際的인 金融機關 同質化現象 等을 고려하여 規制當局의 주도하에 시작된 것으로 안다.

2) 業務領域調整의 現實的 問題點

業務領域調整이란 결국 기본적으로는 어느 金融機關이 어떤 업무를 행하는 것이 金融產業의 발전이나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곧 金融機關이 한 업무에 전문화하는 것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중에 어느것이 더 바람직하나 하는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된다. 이 문제는 결국 金融產業에 多角化의 經濟性(economy of scope)이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되고 이러한 문제는 다시 실증에 의해 그 해답을 구해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의 金融機關의 形成過程이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고 각 金融機關이 설립목적에 따라 그동안 영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각 金融機關은 그 나름대로의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金融機關이 전문화된 金融機關으로 존속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 당시의 설립목적이 현재의 금융환경에서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業務領域調整의 현실적 문제는 과거에 金融機關의 형성시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그 때 그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식으로 업무영역을 조정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원칙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점이다.

물론 업무 영역 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조정의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金融機關들 사이의 경쟁력의 조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規制當局이 해결해야 할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3) 바람직한 業務 領域調整의 方向

우선 먼저 우리가 金融機關의 業務 領域調整을 능동적으로 급히 수행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金融產業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들은 업무의 영역이 잘못되어 나타났다라기 보다는 金融機關의 자율적인 경영의 결여로 생겼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는 業務領域調整에 대한 여러 안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관련당사자가 모두 수긍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결코 없다고 본다. 여기서는 오히려 업무영역개편이라 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金融機關 스스로가 앞으로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는 변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환경의 조성은 앞에서 이야기한 金融機關의 自律的인 經營이 보장되는 그러한 환경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업무영역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金融自律化라는 문제와 같은 시각에서 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利子率 規制緩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시한을 두고 각 金融機關이 바라는 방향으로의 변신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規制當局이 직접 나서서 업무영역개편이라는 능동적인 業務領域調整 보다는 金融機關 자체가 자구책으로서 업무영역이 재편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